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22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 김도읍 · 신동욱 · 조지연

인요한 • 박성훈 • 장동혁

김은혜 • 권영세 • 김예지

구자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6 개월 간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인 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.

또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양육 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,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,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문제 임.

이에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도 육아

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, 제19조의7 신설, 제39조제3항제6호의2 신설).

#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"를 "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 제19조의7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,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"를 "입양한 자녀 및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아동을 포함한다"로 한다.

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7(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) ① 사업주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거나,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 또는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 근로자가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,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심리 등의 참여 목적으로 휴가(이하 이 조에서 "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"라 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②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 이 경우

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

-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- ④ 사업주는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1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지원) ① -----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 「근로」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 제19조 기준법 : 제74조에 따른 출산 의7에 따른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,-----전후휴가 또는 유산・사산 휴 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출산전후 휴가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 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육아휴직) ① ------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 -----입양한 자녀 및 「국 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22 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 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임 시양육결정을 받은 아동을 포 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. 함한다-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 -----. ---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7(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) ① 사업주는 「아동복지 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거나,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 또는 「국제입양에 관 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 근로자 가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,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등의 참여 목 적으로 휴가(이하 이 조에서 "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" 라 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 이 를 허용하여야 한다.

- ②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 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 급으로 한다.
-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

제39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7. ~ 9. (생략)

④·⑤ (생 략)

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
- ④ 사업주는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 3	 	 	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제19조의7제4항을 위반하 여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 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 한 처우를 한 경우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